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6. 3. / (총 14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정 혜 은		044-202-3575
전 략기 획 팀	담 당 자	윤 민 수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노 혜 원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이 승 훈		044-200-2295
보건복지부	과 장	김 우 중		044-202-3580
보육기 반과	담 당 자	오 성 일	저 원	044-202-3581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정 원 상	전 화	044-203-2861
관광산업정책과	담 당 자	김 영 미		044-203-2863
중앙방역대책본부	팀 장	조 우 경		043-719-726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김 은 경		043-719-9081
중앙재 난안전 대책본부	팀 장	이 병 철		044-205-6511
격리지원반	담 당 자	전 종 형		044-205-65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 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쿠팡 물류센터 및 소규모 종교활동 등에 따른 산발적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요 감염 발생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곧 100회를 맞이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등교수업 확대 및 여름철 방역 대응 등에서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 회의에 각 지방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한 것은 미래 세대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기성 세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면서, 등교 수업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고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6월 1일)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결과, **13개 시·도는 개원 실시**(이 중 6개 도는 시·군별 휴원 연장), **서울·대구·인천·경기 4개 시·도는 휴원 연장**
 -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한다.
 -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할 수 있다.
 -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 정부는 그간 세 차례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은 구비 중이다.
- 한편 어린이집에 등록하였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등원일과 관계없이 부모보육료를 지원**한다.
- □ 정부는 어린이집 내 등원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여 필요 시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2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붙임 1】참고
 -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 >
 - ▷ 수건, 수영복, 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 ▷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 ▷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하여 이용객 집중 방지하기











- □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 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 이에 더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하였다.
 - 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또한 지켜주시기를 요청하였다.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마련·배포

-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마련**하여 오늘 **배포**한다고 밝혔다.
 -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집단 방역 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 □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방역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자가점검표 >

주요 지표	위 험 도			
무료 지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 /미레트) 자연 하기가 가느하기	창문출입문 통한	일 2회 이상	환기 불가	
·(밀폐도) 자연 환기가 가능한가?	상시 환기 가능	환기 가능	(치우 혜지)	
(밀집도) 이용자 간 거리 두기가	이용자 간	이용자 간	이용자 간	
가능한가?	2m 유지 가능	1m 이상 위지 가능	1m 유지 불가	
·(지속도) 이용자 평균 체류	15분 내	1시간 내	1시간 이상	
시간은?	13년 게	1/10 -11	171E - 10	
·(군집도) 공간 내 평균 동시	10명 미만	10명 이상	100명 이상	
이용 인원은?	100 -15	100명 미만	100 10	
·(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정도는?*	6개 모두 준수	4개 이상 준수	4개 미만 준수	

- *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직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독려, 자주 닿는 표면 소독, 이용자 명부 작성 등
- ※ 위험도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주요 지표	위 험 도
밀폐도	▲자연환기, ▲야외시설 이용 유도 및 우선 배치
밀집도	▲ 바닥면적 4㎡당 1명 입장,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
	▲ 비대면 접수(무인 주문기), 투명 칸막이 등 설치
군집도	▲ 이용시간대 분산 유도, 이용 인원 제한 등
활동도	▲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노래 등)
	▲ 영화관스포츠관람 장소 등 음식물 섭취·반입자제
지속도	▲ 사전 예약제 운영, ▲ 배달·포장 활성화,
	▲ 입장 후 1시간 이상 소요됨을 안내
관리도	▲ 방역관리자 지정·방역지침 마련,
	▲ 손 소독 안내(손님에게 메뉴판 제공 시 손 소독제 제공하여 손 씻기 권유),
	▲ 마스크 착용

○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하여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하였다.

<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모임 전	▲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모임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 ▲ 방역수칙 미리 숙지하도록 안내 ▲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거리 두기(2m(최소 1m) 이상) 가능한 곳으로 장소 선정
모임 중	▲소규모(10명 이내)인원, 모임 시간은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노래 부르기·음식 먹기 등 침방울 발생행위 자제 등 ▲마스크 착용(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안 되는 경우도 포함)
모임 후	▲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외출 자제, 3~4일 휴식

□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 소모임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했다.











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독서실
 453개소 등 총 39,35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29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소독·환기 미흡,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 등 **총 67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62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0개반, 96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4,68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73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5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이격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77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6월 2일)까지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하여 75개소는 고발하였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6월 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9,9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6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331명이다.
 - 3,568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99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9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월 2일)는 **무단이탈자 6명**이 친지 방문, 지인 만남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5명은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 지 1명은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97명이며,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 2일) 입소 178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3명











- < 붙임 > 1.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물놀이형 포함)
 - 2. 감염병 보도준칙
 - 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마스크 착용법
 -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붙임1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물놀이명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 밑줄 :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에서 물놀이형 추가·수정한 내용

Ⅱ 이용자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 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 <u>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키즈카페 등)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u> 확인 등 방역 협조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스노클 등 휴대용 용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u>가급적 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의</u>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목욕업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②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u>동일 장소 등에</u>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유워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 ㅇ 매일 1회 이상 놀이기구(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 실시하기
-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 차 두고 이용하기
-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 ㅇ 놀이기구 탑승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안내하기
- 줄 서는 장소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하여 안내하기
- ㅇ 대규모 행사, 공동 활동 등 최소화하기
- 식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유도하기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안내하기

[물놀이형 유원시설 추가 적용사항]

- 수영복, 수건, 물놀이용품(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안내하기
- 공용물품(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은 사용 후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 전에 소독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기
- <u>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u> 등 공용시설은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줄이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 개인 휴게시설은 실외에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배치하기
- <u>실내보다 실외에 위치한 벤치, 정자, 그늘막(카바나), 일광용 의자(선배드) 등의</u> <u>휴게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u>
- 물놀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 이용자 간 거리유지 2m(최소 1m)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관리하기
- <u>안전요원에게 기본 수칙 준수 감시(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에 대한 업무를 중복 배정하지 않고,</u> 다른 담당 직원에게 업무 배정하기
 -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목욕업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붙임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